

대기관리권역법, 환경기술산업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어린이통학버스 등 대체 차량이 없는 경유차의 사용제한 예외 추가
- 환경산업 육성 지원정책(녹색전환보증사업 등) 법적근거 마련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 대체자동차로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자동차 사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차고지 등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경유자동차 이외의 대체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기후변화대응기술 등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녹색전환보증사업,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와 같이 환경부 장관이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마련했고, 응축성 먼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먼지의 정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능동적·자율적 관리와 시설 개선 등을 유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모범사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무관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명령 우선순위제, 대집행비용 감경제를 도입하고, 불법행위자로부터 대집행비용 구상력을 강화했다. 또한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상부토지에 주차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정화시설 설치와 야적행위를 가능하게 하여 활용용도를 제고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발전소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을 통해 공장 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까지 재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국가 및 지자체가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오염된 토양을 제때 정화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ESG)'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기업 등 민간의 참여와 실적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 자연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존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 중심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평가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해성평가에 대한 다각적·심층적 검토 기반을 강화했다. 관련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하여 화학안전 분야 교육 및 기업지원 사업 등을 보다 전문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 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의 16개 국가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 수익자부담금 :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해당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14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정윤환 (044-201-6390)
		담당자	서기관	노원택 (044-201-6399)
(대기관리권역법)	환경부 교통환경과	책임자	과 장	전원혁 (044-201-6920)
		담당자	사무관	김소정 (044-201-6929)
(환경기술산업법)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책임자	과 장	김경석 (044-201-6701)
		담당자	서기관	이지선 (044-201-6702)
	환경부 환경교육팀	책임자	과 장	한명실 (044-201-6531)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교통환경과	책임자	과 장	전원혁 (044-201-6920)
		담당자	사무관	이영훈 (044-201-6933)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생활환경과	책임자	과 장	장현정 (044-201-6900)
		담당자	서기관	김진형 (044-201-6911)
(자원재활용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책임자	과 장	안중기 (044-201-6790)
		담당자	사무관	최석 (044-201-6919)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담당자	사무관	김형준 (044-201-7381)
(물재이용법)	환경부 생활하수과	책임자	과 장	이승현 (044-201-7360)
		담당자	사무관	권용락 (044-201-7371)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책임자	과 장	윤태근 (044-201-7020)
		담당자	사무관	최홍철 (044-201-7024)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영수 (044-201-7170)
		담당자	사무관	윤여솔 (044-201-7177)
(탄소중립기본법)	환경부 기상청 기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차은철 (044-201-7220)
		담당자	사무관	김준호 (044-201-7224)
(환경범죄단속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책임자	과 장	원재광 (042-481-7381)
		담당자	서기관	노경숙 (042-481-7376)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 성 (044-201-6160)
		담당자	사무관	강해옥 (044-201-6161)
(지방일괄이양법)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병훈 (044-201-6770)
		담당자	사무관	이연진 (044-201-6783)
(댐건설관리법)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책임자	과 장	정경화 (044-201-6350)
		담당자	사무관	정진호 (044-201-6357)
		책임자	과 장	서해엽 (044-201-7682)
		담당자	사무관	이정현 (044-201-7685)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연번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044-201-****)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 용도 경유 자동차의 신규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 근거 신설 ○ 대체자동차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의 대상·내용 확대 ○ 어린이통학버스용 기존 경유 자동차의 사용제한 적용 기준을 “차량 소유자”에서 “같은 용도의 차량”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형 어린이통학버스 등 대체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대체자동차 전환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경유 자동차 사용 제한 예외를 인정 ○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 ○ 시설 양도·양수, 인사이동 등 소유자 명의 변경이 잦은 업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경유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 	<p>공포한 날</p> <p>공포한 날</p> <p>공포한 날</p>	<p>교통환경과 전원혁 과장(6920) 김소정 사무관(6929)</p>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정의 신설 및 환경산업·환경기술 정의 확대 ○ 환경산업체 창업·사업화 지원 정책(녹색보증계정, 환경산업지원 펀드 투자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원 재원 내 기후대응기금 추가 ○ 환경전문공사업·환경컨설팅회사 관련 운영 조항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포함된 환경분야(수자원관리, 유해물질관리 등)에 대한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촉진 ○ 환경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 시행 →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으로 우리 녹색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원 가능 	<p>공포 후 1년</p> <p>공포한 날부터 (제6조3항 제6조4항)</p>	<p>녹색산업혁신과 김경석 과장(6701) 이지선 서기관(67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 환경성 표시·광고 및 환경관련 인증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 환경성 표시·광고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 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p>공포 후 1년</p>	<p>환경교육팀 한명실 과장(6530) 이광성 사무관(6531)</p>

연번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044-201-****)
3	대기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요구 금지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 저하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수입·판매·판매중개·금지 및 처벌규정 마련 ○ 먼지를 '여과성'과 '응축성' 먼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 심사·평가 기준과 방법·절차 등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불법개조 행위 금지 대상(기존 자동차)에 건설 기계를 추가하여 대기환경 개선 기여 ○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수입·판매 등의 불법행위 방지로 대기환경 개선 기여 ○ 응축성 물질에 대한 배출특성 등을 파악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가 보다 정교해지고 효과적으로 개선 	<p>공포한 날</p> <p>공포한 날</p> <p>공포 후 1년</p>	<p>교통환경과 전원혁 과장(6920) 이영훈 사무관(6933)</p> <p>대기관리과 장현정 과장(6900) 김진형 서기관(6911)</p>
4	실내공기질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재지정 근거 마련 ○ 우수시설 지정·재지정 취소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능동적·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고 우수시설 지정을 위한 설비 개선 등을 통해 모범사례 형성 	<p>공포 후 1년</p>	<p>생활환경과 안중기 과장(6790) 최석 사무관(6919)</p>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규정을 법률에 신설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관련 표시 신청 및 확인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제품생산자에 해당하는 제품·용기의 제조자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재생원료 사용 촉진 가능 ○ 재생원료 사용비율표시·확인절차를 구체화하여 체계적 제도 운영 가능 	<p>공포 후 6개월</p>	<p>자원재활용과 이정미 과장(7380) 김형준 사무관(7381)</p>

연번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044-201-****)
6	폐기물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 ○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 대상자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불법방지 노력에 대한 대집행 비용 감경을 허용 ○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토지 사용용도에 주차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정화시설 설치와 야적행위를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시 효과적인 구상이 가능 ○ 불법행위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경감 ○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 	공포 후 1년	폐자원관리과 이승현 과장(7360) 권용락 사무관(7371)
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온배수 등 재이용 가능한 온배수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발전소 온배수'를 '온배수'로 수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을 '물 재이용시설'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한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안정적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고 온배수 방류량의 감소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등으로 물 재이용사업 활성화에 기여 	공포 후 6개월	생활하수과 윤태근 과장(7020) 최홍철 사무관(7024)
8	토양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 마련 ○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협의 후 제출토록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정지 처분으로 오염된 토양을 제때 정화하지 못하는 상황 방지 ○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반영 가능 ○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지자체 권한 강화 	공포 후 6개월	토양지하수과 신영수 과장(7170) 윤여솔 사무관(7177)

연 번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044-201-****)
9	자연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참여 근거 마련 및 우수 복원사업 인증제 도입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의무 이행 강제수단 근거 규정 마련 ○ 보호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 마련 ○ 생태관광지역 관할 지자체의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생태관광지역 우수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등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등 민간의 생물다양성 ESG사업 활성화, 자연환경복원사업 모범사례 확산 및 질적 향상 유도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체계적 관리 및 복원사업 관리 효율성 제고 ○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 및 징수 효율성 제고 ○ 보호지역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통계 신뢰성 향상 ○ 생태관광지역 활성화 전략 수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성, 지역참여도, 지속가능성 등의 평가를 통해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 도모 	<p>공포 후 1년</p> <p>공포 후 6개월</p> <p>공포한 날</p> <p>공포 후 1년</p>	<p>자연생태정책과 차은철 과장(7220) 김준호 사무관(7224)</p> <p>자연공원과 이창규 과장(7316) 유영란 사무관(7311)</p>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한 정의 신설 ○ 단순 기상현상에 대한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이상기후·극한기후를 포함한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 체계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시대에, 이상기후·극한기후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과학적 예측·분석 기반의 기후위기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에 기여 	<p>공포 후 6개월</p>	<p>기상청 기후정책과 원재광 과장 (042-481-7381) 노경숙 서기관 (042-481-7376)</p>

연번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044-201-****)
1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통합관리사업장 배출시설중 대기·폐수·토양·폐기물배출시설을 법 적용배출시설 대상에 포함 ○ 통합관리 사업장 대기·폐수배출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와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 행정처분효과의 승계기간(1년) 명시 및 양수인 보호근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배출 방지 ○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로 환경오염 유발 기업의 책임 강화 ○ 기업 책임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함에 따라 제도 실효성 확보 	<p>공포한날</p> <p>공포 후 6개월</p> <p>공포 후 6개월</p>	<p>환경조사담당관 유성 과장(6160) 강혜옥 사무관(6161)</p>
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성평가 시 전문가 사전의견 청취 근거 마련 ○ 한국환경보전원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성 평가에 대한 다각적·심층적 검토기반 강화 ○ 화학안전분야 교육 및 기업지원등 업무수행 전문성 강화 	<p>공포 후 6개월</p>	<p>화학물질정책과 김병훈 과장(6770) 이연진 사무관(6783)</p>
13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권한 확대(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 포함)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등 사무권한 확대(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 포함) ○ 기초지자체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승인 권한 이양(국가→시도) ○ 특정도서의 명예감시원 위촉 권한 확대(국가→국가, 지자체) ○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확대(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계획 수립, 효과적인 환경교육 서비스 제공 ○ 행정수요의 현장대응성 강화 ○ 시의적절한 계획 수립과 신속한 대응 ○ 현장대응성 강화, 자치분권 확대 ○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교육 활성화 	<p>공포 후 1년 6개월</p>	<p>혁신행정담당관 정경화 과장(6350) 정진호 사무관(6357)</p>

연 번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044-201-****)
1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부담금* 폐지 *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해당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 제도를 실효성이 있도록 정비 	공포한 날	수자원개발과 서해엽 과장(7682) 이정현 사무관(7685)